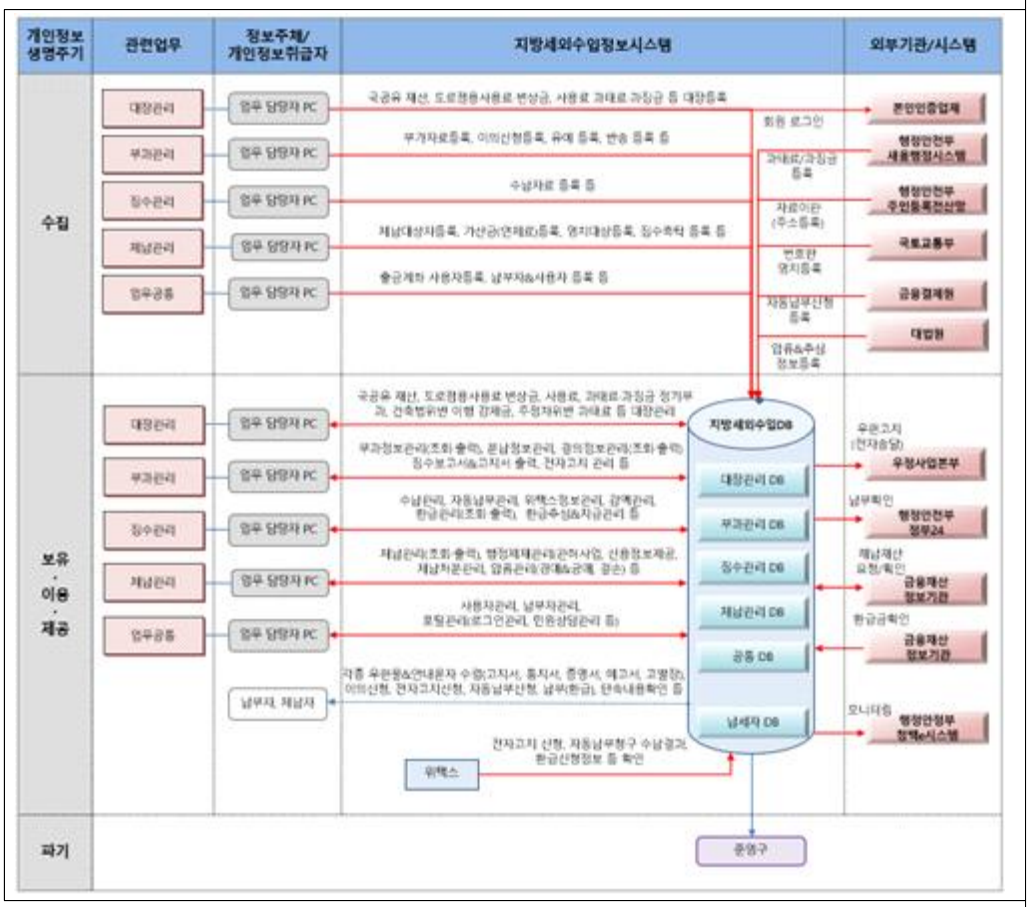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울산광역시 중구</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씨에이에스</td><td>평가 기간</td><td>2026.05.27 ~ 2026.06.30</td><td>평가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현재 운영 중</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신규 구축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2,650,562천원
(VAT 별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3">개인정보파일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 colspan="2">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교통과태료 파일</td><td>34,500건</td><td colspan="2">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td><td>행정안전부</td><td>교통과태료 효율적인 징수</td></tr>
<tr><td>교통유발부담금</td><td>827건</td><td colspan="2">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행정안전부</td><td>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td></tr>
</table>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269건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행정안전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관리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파일	17,852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행정안전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대상자 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관리대장	37,745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82,540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행정안전부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체납관리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910건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E-Mail,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	장애인차량지원
	지방세 세외수입 가상계좌 파일	32,487건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함.
	세외수입 부과관리	499,090건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범죄및수사기록, 국적, 민족, 본적	행정안전부, 검찰청,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세외수입부과 및 관리
	세외수입 체납관리	230,690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건설공제조합, 대법원, PG사(VAN),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 관세청, 한국신용정보원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외수입감액관리	8,606건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산정보	국토교통부, 검찰청	세외수입감액관리
	세외수입과오납관리	3,954건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과오납처리
	세외수입수납관리	468,812건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산정보	행정안전부, 검찰청, 금융결제원	세외수입 수납처리
	세외수입압류관리	159,622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산정보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건설공제조합, 대법원, PG사(VAN),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 관세청, 한국신용정보원	세외수입 압류관리

	세외수입정리보류관리	41,293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산정보	세외수입각 부서에서 타기관이 요청시에 제공함	세외수입 정리보류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17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27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자동차관리법』제74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제22조(사용료),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따라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기간은 10년, 영구 등으로 별도 산정되어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정보파일대장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음
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방안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1.2.1) - 개인정보파일의 전반적인 검토 및 보완 (2.2.1)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현행화 (3.2.1)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내역 공개 현행화 (3.4.1) - 출입통제절차 수립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해당없음
평가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8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13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 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4개 항목을 제외하고 22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 하고 있음.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4개 평가분야 30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